



# 시 보



제1673호 2024. 12. 31.(화)

## 규 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

## 고 시 · 공 고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7
-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48
- 도로지정(건축허가, 신고) 공고----- 70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발령----- 71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 목 포 시 장 박 홍 린

---

목포시 규칙 제 1882 호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	273	164	6	15	41	47
	7급	347	211	18	21	43	54
	8급	341	159	6	26	49	101
	9급	311	147	1	14	43	106
연구직	계	16	7			9	
	연구관	1				1	
	연구사	15	7			8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별표 2]

##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렬별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합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학예연구관							
		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소	2	2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소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소	1				1	
	6급	소계	273	164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학예연구소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소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7	211	18	21	43	54
		행정	106	54	16		9	27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5	24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4	10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5	5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9				9	
		환경	5	3			2	
		시설	29	27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소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1	159	6	26	49	101
		행정	90	46	2		13	29
		세무	9	7			2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4	4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27			4		23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방호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1	147	1	14	43	106
		행정	84	41			2	41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70	14				56
		사서	5	5				
		공업	17	3			14	
		농업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1	20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학예연구사	10	6			4	
		환경연구사	4				4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종별	직급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렬별										직렬별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 직		합계		1	1					정무 직		합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 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일반 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행정		2	2					
		기술		1			1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5급	소계		71	34	3	3	8	23	
		행정		14	7	1		6			행정		14	7	1		6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학예연구관									행정+학예연구관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 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 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 건	2	2							행정+사회복지+보 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 호	2					2			행정+사회복지+간 호	2					2
		행정+사회복지+시 설	5					5			행정+사회복지+시 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 호	1					1			행정+공업+농업+간 호	1					1
		행정+해양수산+시 설	2	2							행정+해양수산+시 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시설									행정+사회복지+공업+ 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행정+보건+간호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보건+환경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 구관	2	2							행정+시설+학예연 구관	2	2				
		행정+공업+농업+농촌지 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 도관	1	1				
		행정+공업+복지+시 설	1	1							행정+공업+복지+시 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 설	2	1			1				행정+공업+환경+시 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 연구관	1				1				행정+공업+환경+환경 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 연구관	1				1				공업+보건+환경+환경 연구관	1				1	
	6급	소계	274	165	6	15	41	47		6급	소계	273	164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행정	56	30	5		2	19
		세무	7	7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보건	1			1		
		시설	3	2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4	35			9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전산+사회복 지	4					4			행정+전산+사회복 지	4					4
		행정+사회복지+수 의	1					1			행정+사회복지+수 의	1					1
		행정+사회복지+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시 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 신	4	3	1						행정+전산+방송통 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0	9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 구사	1	1							행정+공업+학예연 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 설	5	5							행정+해양수산+시 설	5	5				
		행정+보건+식품위 생	1			1					행정+보건+식품위 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 전	1	1													
		행정+시설+학예연 구사	1	1							행정+시설+학예연 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 영	1				1				행정+시설+사무운 영	1				1	
		행정+녹지+시설+농 촌	1								행정+녹지+시설+농 촌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시설+농촌 지도사	1	1							지도사						
		공업+보건+환경연 구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공업+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 호	2			2		
		보건+의료기술+간 호	2			2					의료기술+약무+간 호	1			1		
		의료기술+약무+간 호	1			1					보건+의료기술+약 무	1			1		
		보건+의료기술+약 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 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농촌 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업+농촌 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업+농촌 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 안전	1	1				
		공업+수업+환경+환경 연구사	1				1				공업+수업+환경+환경 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 연구사	1								공업+보건+환경+환경 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건축운영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1	208	18	19	42	54		7급	소계	347	211	18	21	43	54
		행정	107	55	16		9	27			행정	106	54	16		9	27
		세무	22	21			1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3	22				21			사회복지	45	24				21
		전산	4	2	1		1				전산	4	2	1		1	
		속기	1		1						속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3	10			13				공업	24	10			14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5	5				
		보건	1			1					보건	1			1		
		의료기술									의료기술						
		간호	7			7					간호	9			9		
		환경	5	3			2				환경	5	3			2	
		시설	28	26			2				시설	29	27			2	
		방송통신	4	4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 호	1	1							사회복지+보건+간 호	1	1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전	16	15			1				운전	16	15			1	
		위생									위생						
		토목운영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8급	소계	342	158	6	28	49	101		8급	소계	341	159	6	26	49	101
		행정	90	46	2		13	29			행정	90	46	2		13	29
		세무	11	9			2				세무	9	7			2	
		사회복지	57	21				36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속기	2		2			
		전산	4	4							전산	4	4				
		공업	19	4		1	1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건	4			4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의료기술	6			6		
		간호	32			9		23			간호	27			4		23
		환경	3	1			2				환경	3	1			2	
		시설	26	19			7				시설	26	19			7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3	1	1		1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 지	1	1							행정+전산+사회복 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1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	1	1							행정+해양수산+시	1	1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설									설						
		전산+방송통신+시 설	1	1							전산+방송통신+시 설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방호									방호						
		운전	14	12	1		1				운전	14	12	1		1	
		위생									위생						
		건축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9급	소계	315	150	1	14	44	106		9급	소계	311	147	1	14	43	106
		행정	87	43			3	41			행정	84	41			2	41
		세무	4	4							세무	4	4				
		전산	3	3							전산	3	3				
		사회복지	72	16				56			사회복지	70	14				56
		사서	5	5							사서	5	5				
		공업	19	4			15				공업	17	3			14	
		농업	1	1													
		녹지	5	5							녹지	4	4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3	3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보건	5			5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환경	4	3			1	
		시설	23	22			1				시설	21	20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전산	4	3			1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3			3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공업+시설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	3			3		
		방호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운전	19	9	1	3	6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 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 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학예연구사	10	6			4				학예연구사	10	6			4	
		환경연구사	4				4				환경연구사	4				4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 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 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 사	지도사 합계	3	3						지도 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농촌지도사	3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규칙 제 1883 호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우수선수 영입비)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제18조 관련)

(단위 : 원/1명, 1일)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비	비고
25,000	5,000	5,000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별표 7】**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의2 관련)

(천원)

등급	유치비 기준	지급액	비고
A등급	○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입상 선수	~50,000/ 3~5년	
	○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	~20,000/ 2년	
B등급	○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상비군) 출신 ○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	~20,000/ 3~5년	
		~8,000/ 2년	

- ※ 기준은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 구체적인 액수(실지급액) 결정은 소관부서와 감독이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 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선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종목)	근무직위

###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 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 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 3.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③ “직장운동경기부” 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 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선수” 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원” 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 ①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 및 근무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 7. 유급휴일

-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② 근로자의 날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북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부대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10.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1. 보수

### ① 임금

- 월급(본봉) : \_\_\_\_\_ 원                      - 월급(연봉) : \_\_\_\_\_ 원
- 명절수당 : \_\_\_\_\_ 원 (본봉의 60%/설, 추석 지급)
- 정근수당 : \_\_\_\_\_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기타급여(제수당 등)
  - 훈련수당 : \_\_\_\_\_ 원,                      · 정근수당가산금 : \_\_\_\_\_ 원
  - 체력단련수당 : \_\_\_\_\_ 원,                      · 지도자수당 : \_\_\_\_\_ 원
  - 가족수당 : \_\_\_\_\_ 원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연봉의 1/13을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설·추석(명절)에 나머지 1/13×1/2를 지급한다.

###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한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2. 사회보험 등의 공제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 13. 비용의 부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급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급품을 지급과 동시에 급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 14. 지식재산권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16. 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17.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2조의 2(우수선수 영입비) ①</u>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p> <p><u>②</u>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4】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b> (제18조 관련)</p>	<p><b>【별표4】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b> (제1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식   비</th> <th style="width: 10%;">목욕비</th> <th style="width: 10%;">간식비</th> <th style="width: 10%;">숙박비</th> <th style="width: 10%;">일   비</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채 규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채 규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채 규정용</td> <td></td> </tr> </tbody> </table>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   비	비   고	공무원채 규정용	5,000	5,000	공무원채 규정용	공무원채 규정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식   비</th> <th style="width: 10%;">목욕비</th> <th style="width: 10%;">간식비</th> <th style="width: 10%;">숙박비</th> <th style="width: 10%;">일   비</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td> <td></td> </tr> </tbody> </table>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   비	비   고	25,000	5,000	5,000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   비	비   고																				
공무원채 규정용	5,000	5,000	공무원채 규정용	공무원채 규정용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   비	비   고																				
25,000	5,000	5,000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현 행	개 정 안												
<b>【별표 7】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b> (제12조의2 관련)	<b>【별표 7】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b> (제12조의2 관련)												
<신 설>	(천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영 입 비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A 등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li> <li>○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입상 선수</li> <li>○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50,000/            3~5년         </td> <td></td> </tr>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B 등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 (상비군) 출신</li> <li>○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20,000/            2년         </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 기준은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액수(실지급액) 결정은 소관부서와 감독이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p>	등급	영 입 비 기 준	지급액	비고	A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li> <li>○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입상 선수</li> <li>○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li> </ul>	~50,000/ 3~5년		B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 (상비군) 출신</li> <li>○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li> </ul>	~20,000/ 2년	
등급	영 입 비 기 준	지급액	비고										
A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li> <li>○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입상 선수</li> <li>○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li> </ul>	~50,000/ 3~5년											
B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 (상비군) 출신</li> <li>○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li> </ul>	~20,000/ 2년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제5조 제1항 관련)
<b>[별지 제2호 서식]</b> <b>표준근로계약서</b>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 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선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종목)	근무직위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선수”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선수”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위반시)

####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 ①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 및 근무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 7. 유급휴일

-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② 근로자의 날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10.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

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1. 보수

### ① 임금

- 월급(본봉) : \_\_\_\_\_ 원                      - 월급(연봉) : \_\_\_\_\_ 원
- 명절수당 : \_\_\_\_\_ 원 (본봉의 60%/설, 추석 지급)
- 정근수당 : \_\_\_\_\_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기타급여(제수당 등)
  - 훈련수당 : \_\_\_\_\_ 원,                      · 정근수당가산금 : \_\_\_\_\_ 원
  - 체력단련수당 : \_\_\_\_\_ 원,                      · 지도자수당 : \_\_\_\_\_ 원
  - 가족수당 : \_\_\_\_\_ 원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2. 사회보험 등의 공제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 13. 비용의 부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 14. 지식재산권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16. 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17.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 1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 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목포시장 (인)

근로자(선수) (인)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제5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 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선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종목)	근무직위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 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 3.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_\_\_\_\_ 서 명)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선수”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위”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 ①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 및 근무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 7. 유급휴일

-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② 근로자의 날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연봉의 1/13을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 설·추석(명절)에 나머지 1/13×1/2를 지급한다.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한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회보험 등의 공제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13. 비용의 부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14. 지식재산권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물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목포시 차범석길35번길 19-3	북교동 170	2024.12.24.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http://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24-571호(2024.12.19.)로 결정(변경) 고시된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  
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 12. 26.

### 목 포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재정비촉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34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등에 보입니다.

#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목포시 서산, 온금, 금화, 유달동 일원	390,184	감) 33,393	356,791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 선 및 기반시설 확보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 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기정) 2025년 / 변경) 2027년

##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낙후된 원도심 일원의 도시기능 회복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 및 지구내 특화된 보행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단  
지 조성

##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0,184	감) 33,393	356,79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54,738	-	54,738	15.3	
	연립주택용지	4,382	-	4,382	1.2	
	공동주택용지	41,780	-	41,780	11.7	
	근린생활시설	8,576	-	8,576	2.4	
기반시설 용지	소계	110,995	증) 141	111,136	31.2	
	도로	31,750	증) 239	31,989	9.0	
	보행자도로	373	-	373	0.1	
	주차장	3,099	-	3,099	0.9	1개소
	공원	45,092	-	45,092	12.6	1개소
	녹지	15,212	감) 98	15,114	4.2	
	공공공지	231	-	231	0.1	1개소
	학교	15,238	-	15,238	4.3	서산초
존치관리구역		224,451	감) 33,534	190,917	53.5	

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690세대(1,553인)

구분	계 획 세대수	분양				임대			비고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소계	40㎡이하	40~60㎡	
촉진 1구역	690	621	368	253	-	69	69	-	

주) 본 계획안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다. 교육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 계		31	178,608 (110,995)	31	178,749 (111,136)	
교 통 시 설	도 로	18	63,676 (31,750)	18	63,915 (31,989)	
	주 차 장	1	3,099 (3,099)	1	3,099 (3,099)	1개소
	보 행 자 도로	1	373 (373)	1	373 (373)	
공 간 시 설	공 원	2	80,152 (45,092)	2	80,152 (45,092)	근린공원 2개소
	녹 지	7	15,212 (15,212)	7	15,114 (15,114)	경관녹지
	공 공 공 지	1	231 (231)	1	231 (231)	
	광 장	-	627 (-)	-	627 (-)	
공 공 시 설	학 교	1	15,238 (15,238)	1	15,238 (15,238)	서산초등학교

기반시설 면적“( )”은 재정비촉진1구역 내 면적임.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 계		9	60,304	9	60,206	
공원	근 린 공 원	2	45,092	2	45,092	-
녹지	경 관 녹 지	7	15,212	7	15,114	경관녹지 변경

기반시설 면적“( )”은 재정비촉진1구역 내 면적임.

마. 교통계획 - 게재생략

바. 경관계획 - 게재생략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65,733	165,874	-	
재정비촉진구역	서산·온금 재정비촉진 1구역	온금동 192번지 일원	165,733	165,874	주택재개발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기준용적률(%)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서산·온금 재정비촉진 1구역	165,733	220	주택재개발	
변경	서산·온금 재정비촉진 1구역	165,874	220	주택재개발	

자. 재정비촉진사업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0,184	감) 33,393	356,791	100.0
소계		292,900	감) 33,393	259,507	72.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108	감) 33,393	195,715	54.9
	제2종일반주거지역	63,792	-	63,792	17.9
상업지역 소계		477	-	477	0.1
일반상업지역		477	-	477	0.1
공업지역 소계		702	-	702	0.2
일반공업지역		702	-	702	0.2
녹지지역 소계		96,105	-	96,105	26.9
자연녹지지역		96,105	-	96,105	26.9

차. 재정비촉진사업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

고도지구(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4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목포시 온금동 122-19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350	-	
변경	3-4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목포시 온금동 122-19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209	-	

경관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유달지구	자연경관지구	유달공원 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일부	103,409 (4,128)	-	-	건설부고시 제192호 (1977.10.14)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시설보호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내항	항만시설보호지구	내항 해안도로변	104,000 (480)	전남고시 제113호 (1977.5.31)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카.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 촉진구역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구역	획지명	상한용적률	건폐율	획지별용적률	최고층수 <sup>1)</sup> (최고높이)	주용도	비고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1-1	224.3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임대	
	1-2		60%이하	215%이하	2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60%이하	190%이하	7층 이하			
	1-4		관계법령에 의함				교육시설	존치
	1-5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sup>2)</sup>	연립주택		
	1-6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7		60%이하	200%이하	1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및 임대	

1) 지반고를 포함한 건축물의 높이는 대상지 주변 유달산 주요능선 높이 8부능선(91.44m)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목포시 도시계획조례)

## 2)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구분	경미한 변경사항
재정비촉진계획	1. 촉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2. 단계별 사업물량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의 변경 및 단계별 사업추진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주1) 향후 관련지침,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변경시 그에 따름

주2) 경미한 변경사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관련조례 및 상위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타. 촉진구역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1)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계획

구분	합계 (㎡)	촉진구역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존치관리구역
① 촉진구역(㎡)	165,874	165,874	-
기반 시설 면적	② 계획기반시설(㎡)	111,136	-
	분담비율(%)	67.0	-
	③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8,867	-
	④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71,409	-
	순부담면적(㎡) A=②-③-④	860	-
	⑤ 존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A/(\text{①}-\text{⑤}) \times 100$	35,879 0.6	- 0.6

※ 존치관리구역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존치로 기반시설부담율은 재정비촉진1구역만 산정

### 2) 기반시설 비용부담주체

시설구분	설비비용부담주체		비고
	부지조성	시설설치	
유 달 로 (아 리 랑 고 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도 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공 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녹 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학 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주 차 장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주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주2)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고려하여 목포시 등 재원별 분담계획이 확정됨

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소 계		40㎡이하		40~60㎡		60㎡초과		비고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합 계	69	100.0	69	100.0	-	-	-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 1구역	69	100.0	69	100.0	-	-	-	-	

하.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 게재생략

거.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기 정

구분	사업기간			비고
	조합설립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5	2018	2020	재정비촉진1구역

■ 변 경

구분	사업기간			비고
	조합설립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5	2025	2027	재정비촉진1구역

너.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구분	구역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존치관리구역	224,451	증) 33,534	190,917	·재정비촉진지구 내 등록문화재 707호 부지 제척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해제

다.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목포시 온금동 192번지 일원	165,733	
변 경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목포시 온금동 192번지 일원	165,874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5,733	증) 141	165,874	100.0	
주택건설용지	54,738	-	54,738	33.0	
연립주택용지	4,382	-	4,382	2.6	
공동주택용지	41,780	-	41,780	25.2	
근린생활시설	8,576	-	8,576	5.1	
기반시설용지	110,995	증) 141	111,136	67.0	
도 로	31,750	증) 239	31,989	19.3	
보행자도로	373	-	373	0.1	
주차장	3,099	-	3,099	1.9	1개소
공원	45,092	-	45,092	27.2	1개소
녹지	15,212	감) 98	15,114	9.2	
공공공지	231	-	231	0.1	1개소
학교	15,238	-	15,238	9.2	서산초등학교

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5,733	증) 141	165,874	100.0	
주거지역	104,071	증) 141	104,212	62.8	
제1종일반주거지역	40,492	증) 141	40,633	24.5	
제2종일반주거지역	63,579	-	63,579	38.3	
공업지역	621	-	621	0.4	
일반공업지역	621	-	621	0.4	
녹지지역	61,041	-	61,041	36.8	
자연녹지지역	61,041	-	61,041	36.8	

주)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면적변경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고도지구(변경)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 제한내용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4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목포시 서산동 13-101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350	-	
변경	3-4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목포시 서산동 13-101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209	-	

○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고도지구	○ 면적변경 A = 128,350m <sup>2</sup> → 128,209m <sup>2</sup> 감) 141m <sup>2</sup>	○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면적 변경

경관지구(변경없음)

○ 경관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sup>2</sup>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달 지구	자연 경관지구	유달공원 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일부	103,409 (4,128)	-	-	건설부고시 제1977-192 호 (1977.10.14.)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 시설보호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내항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항 해안도로변	104,000 (480)	전남고시 제1977-113호 (1977.5.31)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3	13	25	보조간 선	5,290 (1,056)	대3-31 동명동10-2도	중1-1 산정동182도	일반 도로	30호광장	전남고시 제1999-150호 (1999.07.13)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1	81	15	집산도로	664 (664)	대3-13 서산동24-27대	중3-3 온금동202도	일반도로	서산근린공원	목포고시 제2012-368호 (2012.11.05.)	
기정	중로	3	82	12	국지도로	644	중1-81 온금동22-3대	대3-31 온금동186대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2012-368호 (2012.11.05)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385 (131)	대3-13 해안동10-2도	소1-57 해안동19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330 (228)	대3-13 금화동10-2도	소1-49 해안동3-28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232	대3-13 금화동19도	대3-13 금화동19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80	소1-57 유달동19도	소1-57 유달동19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2	58	8	국지도로	160	대3-13 유달동19도	소3-78 유달동19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164	소3-75 서산동17-2대	소3-75 서산동22-58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2017-350호 (2017.10.12)	
기정	소로	2	469	6~8	국지도로	125	광장36 서산동31-1도	소3-74 서산동9-5대	일반도로		1977년이전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로	392 (122)	광장36 서산동31-1도	소1-48 경동11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로	60	소1-56 서산동40-6도	소3-73 서산동142-2도	일반도로		목포고시 제2017-178호 (2017.10.26)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280	소3-72 서산동31-1도	소3-70 서산동1-7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229	소3-75 유달동31-1도	소3-71 유달동31-1도	일반도로		1977년이전	
기정	소로	3	75	6	국지도로	276	대3-13 유달동31-1도	소3-74 유달동31-1도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기정	소로	3	77	6	국지도로	70	소2-58 유달동12-102도	서산초교 유달동3-102대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8	6	국지도로	70	소1-57 금화동19도	서산동 12-26대	일반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서산1	12	특수도로	30	중로1-81도 온금동22-7대	중로3-82 온금동77-1대	보행자전용도로		전남고시 제2022-450호 (2022.09.29.)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축진1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8	주차장	서산동 22-2번지 일원	3,099	-	3,099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삭도(변경없음)

○ 삭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본 선	유달산	고하도		1,300	-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7	-	교통광장	목포시 서산동 9-26전 일원	627	-	627	목포시고시 제2002-39호 (2002.05.08)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12-1 번지 일원	8,554	-	8,554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165-17 번지 일원	2,063	-	2,063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7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85 번지 일원	733	-	733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8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46-1 번지 일원	2,838	-	2,838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70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22-58 번지 일원	665	-	665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변경	109	녹지	경관녹지	서산동 24-21 번지 일원	102	감) 6	96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변경	110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218 번지 일원	257	감) 92	165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9	경관녹지	○면적 변경 : A = 102m <sup>2</sup> → 96m <sup>2</sup> 감) 6m <sup>2</sup>	○재정비 촉진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110	경관녹지	○면적 변경 : A = 257m <sup>2</sup> → 165m <sup>2</sup> 감) 92m <sup>2</sup>	○재정비 촉진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서산	근린공원	목포시 서산동 일원	35,060	-	35,060	건설부고시 제176호 (1986.4.29)	
기정	131	온금	근린공원	온금동 192번지 일원	45,092	-	45,092	전남도 고시 제2012-368호 (2012.11.5)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공공지	서산동 18-36 번지 일원	231	-	231	전남도 고시 제2017-350호 (2017.10.1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9	서산 초등학교	-	목포시 서산동 21-1번지	15,238	-	15,238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1구역	165,733	1-1	8,265	온금동 18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1-2	25,559	온금동 92-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215% 이하	20층 이하	
			1-3	10,155	온금동 2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190% 이하	7층 이하	
			1-4	15,238	서산동 17번지 일원	교육시설	관계법령에 의함			
			1-5	4,382	서산동 17-2번지 일원	연립주택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1-6	311	서산동 24-1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1-7	6,066	온금동 1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200% 이하	10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립예정세대수 : 690세대 (임대주택 : 69세대)</li> <li>- 전용면적 40㎡ 이하 : 69세대 (임대주택 : 69세대)</li> <li>- 전용면적 40 ~ 60㎡ : 368세대 (임대주택 : 없음)</li> <li>- 전용면적 60 ~ 85㎡ : 253세대 (임대주택 : 없음)</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없음 (임대주택 : 없음)</li> </ul>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상한용적률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획지별 평균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의도에 부합되도록 정한 상한용적률 224.3%를 초과할 수 없음							

바)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 경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으로 양호한 조망형 경관유도</li> <li>○ 다양한 층수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li> <li>○ 단지내부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인공적 조경에 의한 경관중점</li> </ul>	
환경 보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및 주민휴게시설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li> <li>○ 토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li> <li>○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li> <li>○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li> <li>○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실내공기오염 최소화</li> <li>○ 발생우수 전량을 도로변을 따라 기설치된 차집관로에 연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li> <li>○ 구역내 발생우수는 우수관거를 설치·사전 배제하여 기존배수유역 및 배수방향을 반영하여 자연유하식으로 배수토록 함</li> <li>○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 폐기물 및 잔료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후 목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li> <li>○ 주요 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li> </ul>	
재난 방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li> <li>○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하고,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li> <li>○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자재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li> </ul>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구분	단위	세대수		비고
		현황 세대 및 인구수	계획 세대 및 인구수	
계획세대수	세대	367	690	
계획인구수	인	792	1,553	세대당 2.25 기준

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러. 기타계획 :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계획, 환경생태 복원 및 에너지 공급계획, 공동구-지하매설물 등 설치계획,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 계획 - 게재생략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0,184	감) 33,393	356,791	100.0	
소 계	292,900	감) 33,393	259,507	72.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108	감) 33,393	195,715	54.9
	제2종일반주거지역	63,792	-	63,792	17.9
소 계	477	-	477	0.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77	-	477	0.1
	소 계	702	-	702	0.2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702	-	702	0.2
	소 계	96,105	-	96,105	26.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6,105	-	96,105	26.9

주)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고도지구(변경)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4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목포시 서산동 13-101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350	-	
변경	3-4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목포시 서산동 13-101번지 일원	5층 (현지반고에서15m)이하	128,209	-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고도지구	○면적변경 A = 128,350㎡ → 128,209㎡ 감) 141㎡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면적 변경

2) 경관지구(변경없음)

경관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달 지구	자연 경관지구	유달공원 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일부	103,409 (4,128)	-	-	건설부고시 제1977-192 호 (1977.10.14.)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3)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시설보호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내향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향 해안도로변	104,000 (480)	전남고시 제1977-113호 (1977.5.31)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3	13	25	보조간선	5,290 (1,056)	대3-31 동명동10-2도	중1-1 산정동182도	일반 도로	30호광장	전남고시 제1999-150호 (1999.07.13)	
기정	중로	1	81	15	집산도 로	664 (664)	대3-13 서산동24-27대	중3-3 온금동202도	일반 도로	서산근린 공원	목포고시 제2012-368호 (2012.11.05.)	
기정	중로	3	82	12	국지도 로	644	중1-81 온금동22-3대	대3-31 온금동186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2012-368호 (2012.11.05)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 로	385 (131)	대3-13 해안동10-2도	소1-57 해안동1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 로	330 (228)	대3-13 금화동10-2도	소1-49 해안동3-2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 로	232	대3-13 금화동19도	대3-13 금화동1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 로	80	소1-57 유달동19도	소1-57 유달동1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2	58	8	국지도 로	160	대3-13 유달동19도	소3-78 유달동1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 로	164	소3-75 서산동17-2대	소3-75 서산동22-5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2017-350호 (2017.10.12)	
기정	소로	2	469	6~8	국지도 로	125	광장36 서산동31-1도	소3-74 서산동9-5대	일반 도로		1977년이전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 로	392 (122)	광장36 서산동31-1도	소1-48 경동11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 로	60	소1-56 서산동40-6도	소3-73 서산동142-2도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17-178호 (2017.10.26)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 로	280	소3-72 서산동31-1도	소3-70 서산동1-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 로	229	소3-75 유달동31-1도	소3-71 유달동31-1도	일반 도로		1977년이전	
기정	소로	3	75	6	국지도 로	276	대3-13 유달동31-1도	소3-74 유달동31-1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기정	소로	3	77	6	국지도 로	70	소2-58 유달동12-102도	서산초교 유달동3-102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78	6	국지도 로	70	소1-57 금화동19도	서산동 12-26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기정	소로	3	서산1	12	특수도 로	30	중로1-81도 온금동22-7대	중로3-82 온금동77-1대	보행자전 용 도로		전남고시 제2022-450호 (2022.09.29.)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축진1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8	주차장	서산동 22-2번지 일원	3,099	-	3,099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삭도(변경없음)

○ 삭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본 선	유달산	고하도		1,300	-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7	-	교통광장	목포시 서산동 9-26전 일원	627	-	627	목포시고시 제2002-39호 (2002.05.08)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12-1 번지 일원	8,554	-	8,554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165-17 번지 일원	2,063	-	2,063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7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85 번지 일원	733	-	733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68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46-1 번지 일원	2,838	-	2,838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기정	70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22-58 번지 일원	665	-	665	전남고 제2012-368호 (2012.11.5)	
변경	109	녹지	경관녹지	서산동 24-21 번지 일원	102	감) 6	96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변경	110	녹지	경관녹지	온금동 218 번지 일원	257	감) 92	165	전남고 제2022-450호 (2022.9.2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9	경관녹지	○면적 변경 : A = 102m <sup>2</sup> → 96m <sup>2</sup> 감) 6m <sup>2</sup>	○재정비 촉진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110	경관녹지	○면적 변경 : A = 257m <sup>2</sup> → 165m <sup>2</sup> 감) 92m <sup>2</sup>	○재정비 촉진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서산	근린공원	목포시 서산동 일원	35,060	-	35,060	건설부고시 제176호 (1986.4.29)	
기정	131	온금	근린공원	온금동 192번지 일원	45,092	-	45,092	전남도 고시 제2012-368호 (2012.11.5)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공공지	서산동 18-36 번지 일원	231	-	231	전남도 고시 제2017-350호 (2017.10.12)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9	서산 초등학교	-	목포시 서산동 21-1번지	15,238	-	15,238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서산·온금지구 단위계획구역	서산·온금동 일원	165,733	증) 141	165,874	전남도 고시 제2012-368호 (2012.11.5)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서산·온금지구	○ 면적변경 A = 165,733m <sup>2</sup> → 165,874 m <sup>2</sup> 증) 141m <sup>2</sup>	○ 재정비촉진지구 내 등록문화재 부지 제척에 따 라 해당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1-1	8,265	온금동 18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2	25,559	온금동92-6번지 일원	공동주택
	1-3	10,155	온금동25번지 일원	공동주택
	1-4	15,238	서산동17번지 일원	교육시설
	1-5	4,382	서산동17-2번지 일원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1-6	311	서산동24-1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7	6,066	온금동 122번지 일원	공동주택

3)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2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 215% 이하(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높이	20층 이하	
	배치	-	
	형태	탑상형 권장	
	색채	-	
1-3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1-5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7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주) 기준용적률은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1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철타이 설 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철타이 설 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학 교(변경없음)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4	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로 결정

## 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기 정

구분	구역명	면적(㎡)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서산·온금 축진1구역	165,733	주택재개발	

### ■ 변 경

구분	구역명	면적(㎡)	사업시행방식	비고
변경	서산·온금 축진1구역	165,874	주택재개발	

# 목포시 공고 제 2024-204호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12. 24.

## 목 포 시 장

-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8.(15일간)
-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양동 141-3 외2	김*희	2024-건축행정과-증축 신고-17	9.4	0.8	7.6	동의
2	양동 141-3 외2	김*희	2024-건축행정과-증축 신고-17	5.2	0.7	4.4	동의
3	석현동 1168-36 외2	(주)목*주택	2024-건축행정과-신축 허가-14	-	-	48	동의
4	석현동 1168-36 외2	(주)목*주택	2024-건축행정과-신축 허가-14	-	-	34	동의
5	석현동 1168-36 외2	(주)목*주택	2024-건축행정과-신축 허가-14	-	-	93	동의

※ 지정도로의 형상에 따라 길이,너비 등의 수치가 부정확 할 수 있음.

-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 건축행정과(☎061-27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훈령 제 864호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30일

##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6조 제4항 관련)

### 1. 공무직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로 원	환 미 화 경 원
		소 계	행 보	정 조	시 장 유	설 비 지		
<b>계</b>	<b>532</b>	<b>350</b>	<b>269</b>	<b>51</b>	<b>30</b>	<b>14</b>	<b>168</b>	
기 획 예 산 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 치 행 정 과	11	11	11					
사 회 복 지 과	12	12	12					
노 인 장 애 인 과	7	7	7					
여 성 가 족 과	48	48	48					
민 원 봉 사 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1	1	1					
문 화 예 술 과	3	3	1	2				
인 재 육 성 과	7	7	7					
스 포 츠 산 업 과	1	1	1					
전 략 산 업 과	1	1	1					
청 년 인 구 과	1	1	1					
해 양 개 발 과	1	1	1					
기 후 환 경 과	2	2	2					
자 원 순 환 과	170	2	2				168	
건 축 행 정 과	1	1	1					
도 시 재 생 과	2	2	2					
도 시 유 산 과	6	6	6					
공 원 녹 지 과	14	14	1	13				
재 난 안 전 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 통 행 정 과	26	26	3	9	14			
대 중 교 통 과	3	3	3					
의 회 사 무 국	10	10	10					
보 건 위 생 과	4	4	3	1				
건 강 정 책 과	31	31	31					
하 당 보 건 지 소	25	25	23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향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예시설관리사무소	10	10	6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14		5	9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소계	행정 보조	시설 장유지	현장 지도점		
<b>계</b>	<b>532</b>	<b>350</b>	<b>270</b>	<b>50</b>	<b>30</b>	<b>14</b>	<b>168</b>
감 사 실	1	1	1				
기획예산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치행정과	10	10	10				
사회복지과	12	12	12				
노인장애인과	7	7	7				
여성가족과	51	51	51				
민원봉사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문화예술과	2	2	1	1			
인재육성과	4	4	4				
스포츠산업과	1	1	1				
지역경제과	1	1	1				
전략산업과	1	1	1				
청년인구과	1	1	1				
해양개발과	1	1	1				
기후환경과	2	2	2				
자원순환과	170	2	2				168
건축행정과	2	2	2				
도시재생과	1	1	1				
도시유산과	4	4	4				
공원녹지과	14	14	1	13			
재난안전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통행정과	26	26	3	9	14		
대중교통과	3	3	3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정책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향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 예 시 설 관 리 사무소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 리 사무소	14	14		5	9		
목포자연사 박 물 관	16	16	11	5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소	5	5	5				
환 경 시 설 관 리 사무소	4	4		4			

**개 정 안**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소계	행정 보조	시설 장유지	현장 지도점		
<b>계</b>	<b>532</b>	<b>350</b>	<b>269</b>	<b>51</b>	<b>30</b>	<b>14</b>	<b>168</b>
기획예산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치행정과	11	11	11				
사회복지과	12	12	12				
노인장애인과	7	7	7				
여성가족과	48	48	48				
민원봉사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관광거점도 시 수 진 단	1	1	1				
문화예술과	3	3	1	2			
인재육성과	7	7	7				
스포츠산업과	1	1	1				
전략산업과	1	1	1				
청년인구과	1	1	1				
해양개발과	1	1	1				
기후환경과	2	2	2				
자원순환과	170	2	2				168
건축행정과	1	1	1				
도시재생과	2	2	2				
도시유산과	6	6	6				
공원녹지과	14	14	1	13			
재난안전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통행정과	26	26	3	9	14		
대중교통과	3	3	3				
의회사무국	10	10	10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정책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5	25	23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향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 예 시 설 관 리 사무소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 리 사무소	14	14		5	9		
목포자연사 박 물 관	16	16	11	5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소	5	5	5				
환 경 시 설 관 리 사무소	4	4		4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 목 포 시 장

### □ 공고사항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4. 1. 14. (15일간)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위반사항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5. 납부방법 : 공고기간 내 목포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6.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위반일자	위반장소		
1	정*영	목포시 양을로 242번길 *, 10*호	2024. 10. 30.	기독병원	100,000원	보관기간경과
2	이*민	목포시 양을로 50*, 110*호	2024. 10. 30.	한국병원	100,000원	보관기간경과

## □ 고지사항

1. 만약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본 과태료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061-270-8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